정 관

매일유업주식회사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매일유업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Maeil Dairies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낙농품제조판매 수출입
2. 축산업
3. 고기, 과실, 채소처리가공 판매
4. 사료제조판매 수출입
5. 낙농기구, 기계탱크 류 제작 판매 및 수출입
6. 낙농기술훈련
7. 국내낙농, 유가공, 축산업의 육성 및 이의 촉진을 위한 다음의 업무
   가. 장기 및 단기여신의 형태로서 농민에 대한 자금지원
   나. 경영 및 기술지도와 지원
   다. 축산 및 가공에 대한 시험연구사업
   라. 정부·정부관리업체 및 국제금융기관 기타 외국기관(외국인 포함)과의 협정 또는 합작투자 계약의 체결
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9. 유아교육에 관련된 영상, 인쇄물 판매 및 제작업
10. 기타식품제조판매 수출입
11. 음료제조판매 수출입
12. 통신판매
13. 전자상거래업
14. 무점포소매업
15. 유아용품 판매
16. 주류판매업
17. 음식점업
18. 화장용품 제조 판매업
1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20. 상품권 발행업 및 유통업
21. 문화예술사업

22. 박물관운영업
23. 창고업
24. 디저트, 제과, 제빵류 등의 제조 및 판매
25. 상품 중개업
26. 경영컨설팅업
27. 사업 지원 서비스업
28.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9. 특수의료용도 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
30.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31.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연구개발
32.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33. 식품 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34. 식품소분판매업
35. 식품첨가물 판매업
36. 소매업
3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8. 의료기기, 장비 판매 및 임대업
39. 의료기기, 장비 수입업
40.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41. 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aeil.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등)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하고,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7,184,968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 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나.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으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A.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B. 당해 주식의 권면액
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3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삭 제)

제13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4조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삭제)

제 3 장 사 채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나.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나.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교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 (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사채발행권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0조 (소집시기)
1. 본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2. (삭제)

제21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요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 및 내외경제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본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함에 있어 회사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소집지)
1.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그리고 주요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와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회사는 주주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24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삭제)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33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4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6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부재 또는 유고 시에는 직급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회)
1.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가. ESG경영위원회
   나. 감사위원회
   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라. 보상위원회
   마.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제4항·제6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47 조의 2(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1. 제 47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 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8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0조 (감사록)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51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삭 제)
7. (삭 제)
8. 대표이사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5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은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삭 제)
4.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의해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의2 (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가)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나)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다)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라)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마)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바)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57 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사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4항·제6항 및 제47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항·제6항의 개정 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의 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회사의 이사를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는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제5항 제외), 제48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